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



지방세 100문 100답



부산광역시 남구
BUSAN METROPOLITAN CITY NAMGU

CONTENTS



제1편 2021년 개정된 지방세 제도

(문1~문20) 6

제2편 부동산 세제

제1장 취득세 (문21~문50) 16

제2장 재산세(문51~문64) 28

제3장 비과세·감면 (문65~문66) 34

제3편 자동차

제1장 차량 취득세 (문67~문69) 38

제2장 자동차세(문70~문79) 40

제4편 기타 지방세

제1장 주민세(문80~문85) 48

제2장 지방소득세(문86~문92) 52

제5편 지방세 체납처분

(문93~문100) 56

참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58





1

편

2021년 개정된 지방세 제도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01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상속포기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체납세액 납부 의무는?

- 2021년 1월 1일 상속개시 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함
- 상속을 포기한 자라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보험금 한도 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해야 함

02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절차는?

- 2021년 1월 1일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해야 함

03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없어지는 경우 체납세액이 적어지는지?

- 지연이자 성격의 유사 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증가산금을 납부 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2022년 2월 3일부터 명칭만 변경할 뿐, 산정 방법은 그대로 유지되어 납부할 세액은 변하지 않음

04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기장을 세무사 등에 위탁했지만 장부 도난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가산세는?

-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사유가 됨
- 해당 시행일 이후 기한연장신청하면 가산세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05 2020년 8월 17일에 장기 임대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 의무기간은?

- 2020년 8월 17일 장기 임대 등록 시 의무기간 : 8년
 ※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에 장기임대의무기간 : 10년

06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녹색인증(최우수)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녹색인증(최우수)이면서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5%
 ※ 납세의무가 성립('21. 1. 1. ~ '23. 12. 31.) 경우, 녹색인증(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1+등급)일 때만 10% 감면

07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받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은?

- 신축 건축물(사용승인일 : '21. 1. 1. ~ '21. 12. 31.)의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5% 감면 적용
 ※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3)
 ※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 인증 받은 경우까지 포함

08 5G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신고 등록면허세 감면율은?

-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21. 1. 1. ~ '23. 12. 31.)로 구축하는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적용함

09

장애인과 공동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받을 경우, 세대분리 금지 등 감면의무사항을 문서로 안내 받을 수 있는지?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감면 적용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개정
- 감면 신청 즉시 바로 교부(우편발송 가능)

10

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신청 기한은?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 취득세의 경우 : 신고하는 때
 - 재산세의 경우 : 6월 30일까지
- 감면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11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 승인 통보 기한은?

-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21. 1. 1. 이후 징수유예 신청하는 경우)
-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봄
 - ※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12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시 다음연도분에 대해 미리 납부하면 공제율 10%가 있는지?

- '21. 1. 1. 이후 다음연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연납공제율은 폐지 됨

13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취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관할 구청으로 취득세 신고서와 비용 계산서 및 견적서[제작사 및 모델명, 형식(kw)포함]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14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일시 거주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한 때에 멸실 예정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함

15 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위탁자(해당 부동산 소유자)
- 2021. 1. 1.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16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은?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 과표 구간별로 재산세율 0.05%p 인하
 - 감면율 : 22.2 ~ 50%(최대 감면액은 18만원)
- 적용기간 : 2021년 ~ 2023년

17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 2021년부터 자동차세 1월 연세액 공제기간이 2월에서 12월까지로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줄어서 연세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
 - 2022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10%
 - 2023년(7%), 2024년(5%), 2025년 이후(3%) 적용 예정

18

주민세 과세체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 '21. 1. 1.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구 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개인(세대주)	10,000원
사업소분(8월)	사업자	- 개인 : 75,000원 - 법인 : 75,000원 ~ 30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19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인지?

- 소방시설 자원(소방시설·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 비용)충당에 사용하는 목적세
- 20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

20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2

부동산 세제

편

제1장 취득세
제2장 재산세
제3장 비과세·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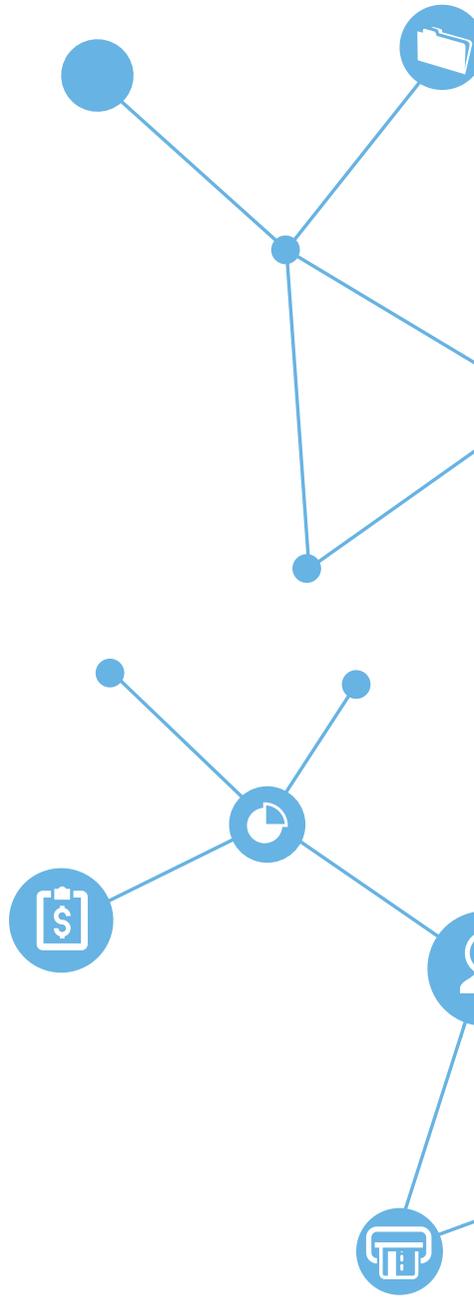
부산 남구 주민은
365일 안전합니다!

2021년 남구 모든 주민은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
전국 어디서나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원구

우편 (5373)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문의처 통합상담센터 ☎ 1522-3555 / 팩스 0505-181-5624
남구청 안전총괄과 ☎ 051-607-4644







제1장 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2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 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1세대의 기준]

23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4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써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25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26

3주택을 소유한 A가 2년간의 해외파견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 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B가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

- B는 A와 별도의 세대로 보므로,
 - B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를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에 미해당 하는 경우 8%를 적용

27

별도세대였던 A(기혼, 1주택을 배우자인 C와 공동소유)가 아버지 B(80세, 1주택 소유)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상태에서, C가 이사를 위한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C는 A, B와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 중)

- A는 B와 별도의 세대로 보므로,
 - C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를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에 미해당 하는 경우 8%를 적용
- * A, C 공동소유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내 처분하는 경우

28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 방법?

-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함
 -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로 적용함

[주택 수 산정 방법]

29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30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31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주택 수로 산정하는지?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32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33

'20.8.12. 이후 1세대가 하나의 주택(입주권,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입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 2주택자로서 8%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해당시에는 1~3%)
 -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함

※ 다만 '20.8.12.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입주당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을 산정

34

부모(2주택 소유)와 동일 세대인 아들(30세 이상)이 분양권을 취득 ('20.8.12 이후)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 3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2%(조정지역) 세율 적용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적용
 - 만약 취득당시 부모봉양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1주택 세율 적용

35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종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36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37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3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39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일시적 2주택]

40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증가되는지?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41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42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43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주택 무상취득 종과세]

44

다주택자(4주택 A,B,C,D 보유)가 보유주택 중 A주택(6억)을 같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유상입증 3.5억)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증여 세율, 유상 세율)은?

- A주택이 조정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유상과 무상 모두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A주택이 非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 유상 입증 부분은 4주택 이상 세율(12%), 미입증 부분은 일반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함

※ (과세표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함(부동산세제과-1430, '20.6.24. 참조)

45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 (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경과조치 등]

46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47

정부 대책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는?

- 주택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 유상거래 매매계약의 경우 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거래 신고자료로 확인

- 최초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로 확인

- 그 외 매매계약 및 분양권 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7.10.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미적용

48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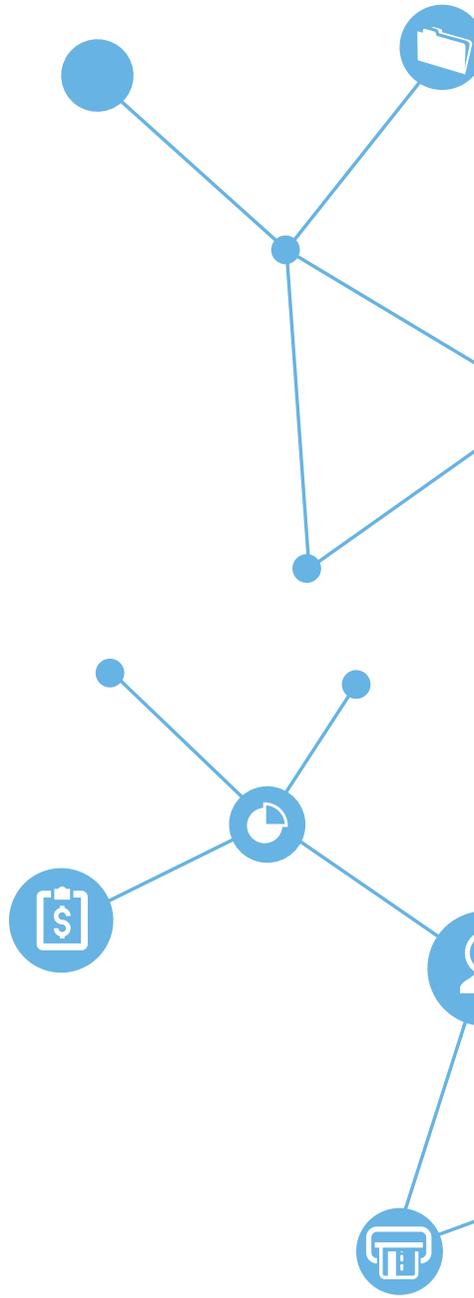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49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5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제2장 재산세

51

재산세 고지 방법과 납기는?

-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발부
 - 7월 재산세 납기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9월 재산세 납기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과세대상 :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52

상가 내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 방법

- 7월에는 주택세액 1/2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1/2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여,
- 총 4매(7월:2매, 9월:2매)의 고지서가 발부

53

납기 말일(7.31)이 일요일인 경우 납기는?

- 납기 말일(7.31)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54

과세유형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 주택 :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21년 6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1년 74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구조·용도·위치·면적 등을 적용한후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7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21년 7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55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란?

-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까지는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상한율 적용

56

재산세 분납기준은?

- 분납대상 : 납세자별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기간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분납대상액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250만원 초과 금액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 내 금액

57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 6월 1일 기준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빠른 날
- 5월 31일 매매한 경우 : 매수자(6.1. 현재 소유자)
- 6월 2일 매매한 경우 : 매도자(6.1. 현재 소유자)

58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 상속 미신고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됨

59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액은?

- 공동주택가격의 60%(‘21년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부부 소유 지분비율로 안분한 세액
- 과세표준을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한 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후 소유지분 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 소유일 경우와 재산세 총액이 동일

60

재산세 고지서 발송 장소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
-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재발급이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일 경우 : 거소지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원하는 수령 기간 및 장소로 고지서 수령이 가능

61

납기 말일(7월분은 7.31, 9월분은 9.30.)까지 재산세 미납시 어떤 불이익은?

- 납기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인 경우
: 그 익월의 다음 월부터 매 1개월마다 0.75%의 증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

62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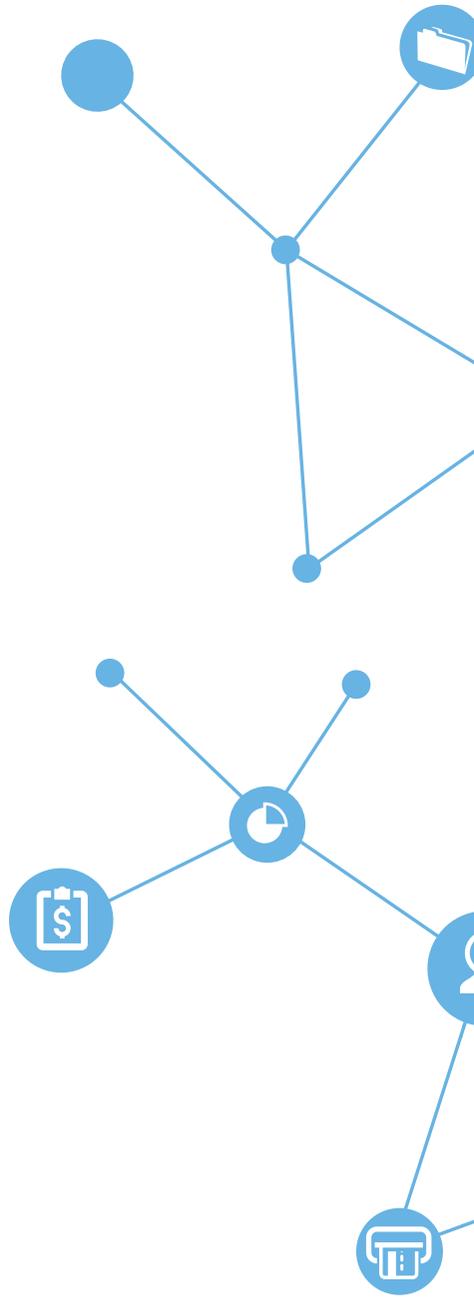
-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 etax.busan.go.kr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 할 세금 검색 → 납부할 세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비회원인 경우
 - : etax.busan.go.kr 접속 → 납부하기 → 고지서의 적색부분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 유의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타인의 고지번호를 알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및 국내 카드(13개 카드사)로 납부 가능
 -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카드사별로 상이)

63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 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00:30~ 23:30에 납부(조회 및 확인 업무는 24시간 가능)
 -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 납세자가 사용 수수료 부담

64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태는?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주택 포함)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제3장 비과세·감면

65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감면 추정 사유는?

● 취득세

- 감면대상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면제

② 전용면적 85㎡이하, 20호 이상 : 50% 감면

- 추정대상

①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추정예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부도, 파산 등

● 재산세

- 감면대상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① 전용면적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감면

② 전용면적 85㎡ 이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5% 감면

- 추정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턴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 추정

※ 추정예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된 경우 및 제43조제4항의 사유(부도, 파산 등)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66

1년 이상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는?

● 가설건축물 과세대상

- 취득세 : 1년 이상 존치할 경우

-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년 이상일 경우

※ 가설건축물 1년 이상 존치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이 많아 매년 가설건축물 조사를 하고 있음

3

편

자동차세

제1장 차량취득세
제2장 자동차세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새로운 에너지의 발전 세계 평화의 꿈 남구

남구 온아이돌봄 정책
* 모두 / 따뜻한 품

출생에서 고등학생까지

50 출산축하금 T.607-4354	30 교복지원비 T.608-483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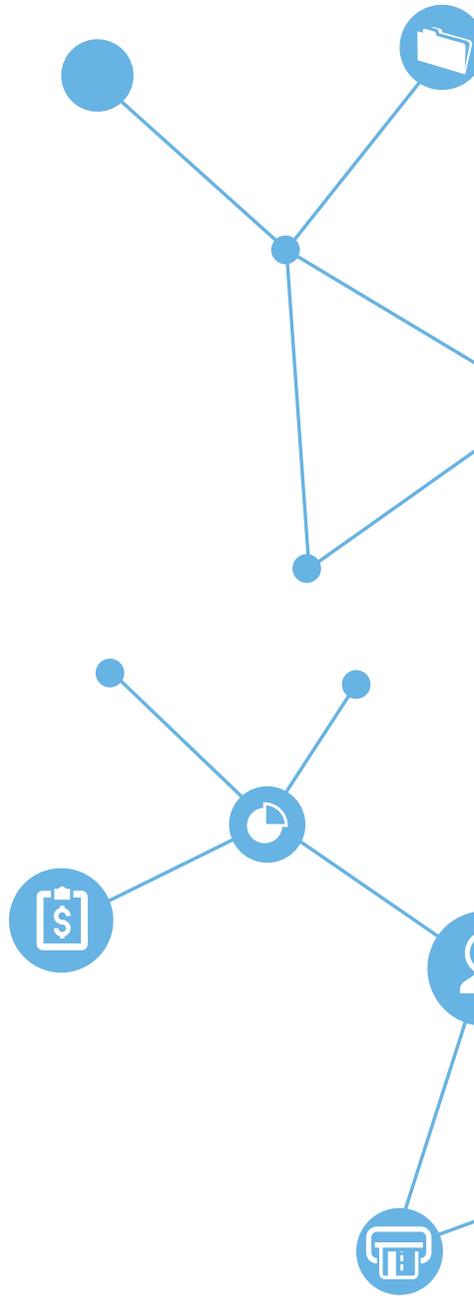
• 2021년 태어난 첫째아부터 50만원씩 지급
• 남구 거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교복 지원비 30만원 지원

"와우~ 남구론 이사가고 싶어"

교육경비 지원

 <p>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추진 • 냉·난방비 공공요금 지원</p>	 <p>교육사업 지원 추진 • 관내 학교에 소규모 환경개선비 2억원 지원</p>
 <p>친환경 급식지원추진 •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대체비 지급</p>	







제1장 차량 취득세

67

장애인 자동차 감면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다른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시 취득세 면제 요건은?

- 감면받던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 한정)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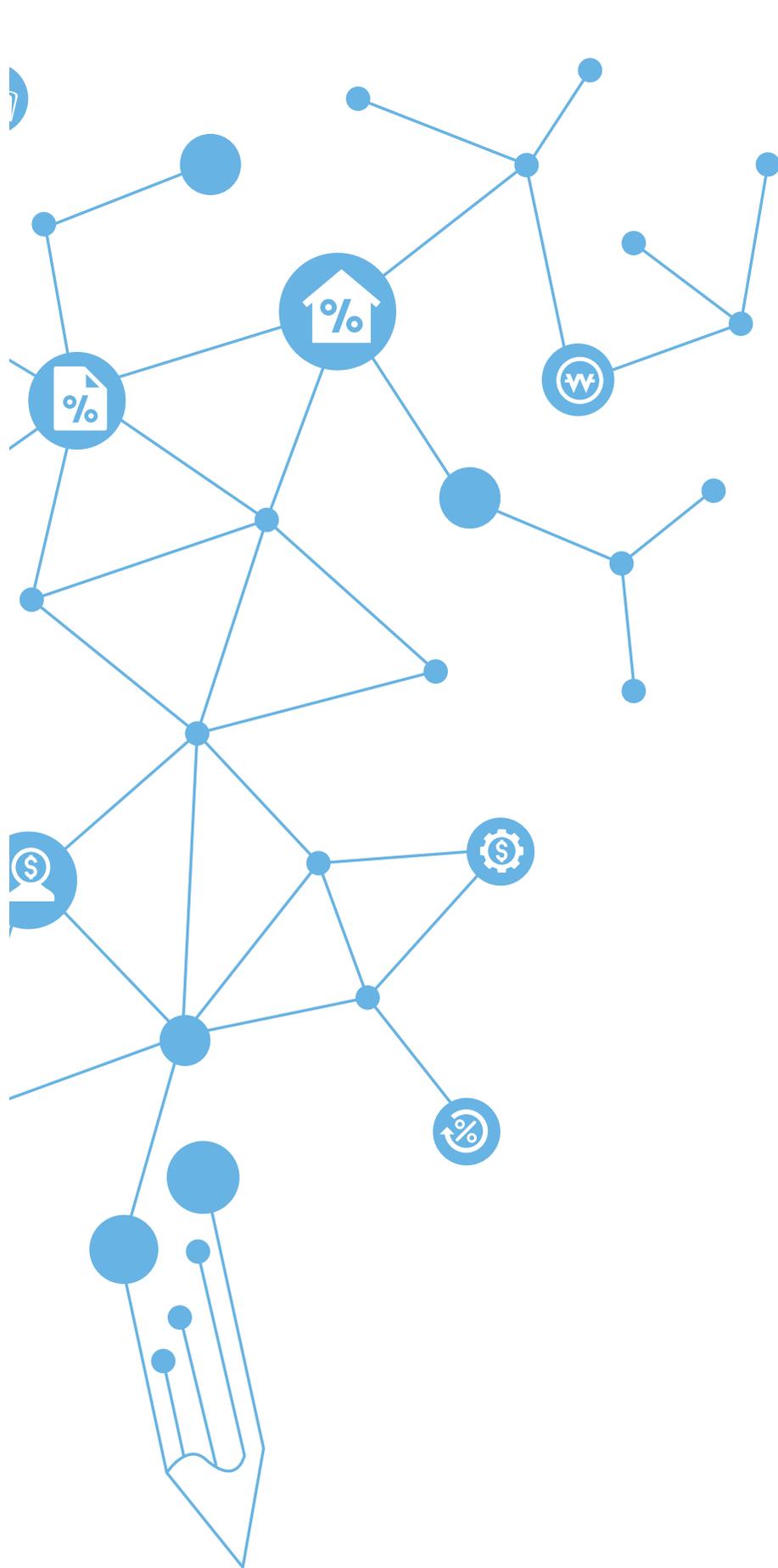
장애인 자동차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사유는?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69

화물운수사업 지입차량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

- 화물운수회사 지입차량의 경우 등록명의자가 운수회사인 이유로 지입차주간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이 기입되지 않아도 취득세 과세대상임



제2장 자동차세

70

자동차세 과세대상 및 고지 방법은?

- 과세대상 : 자동차세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차량,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고지방법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6·12월 각각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 납부기한
 - 6월 자동차세 : 6. 16. ~ 6. 30.
 - 12월 자동차세 : 12. 16. ~ 12. 31.

7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 등록원부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1, 3, 6, 9월에 신고·납부
- 연세액 납부시기

구 분	1월	3월	6월	9월
신고 납부시기	1.16~1.31	3.16~3.31	6.16~6.30	9.16~9.30
공제율	2~12월분 세액의 10%(9.15%)	4~12월분 세액의 10%(7.5%)	7~12월분 세액의 10%(5%)	10~12월분 세액의 10%(2.5%)

72

자동차세 산정기준은?

-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이하	cc당 18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000cc이하	cc당 10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500cc초과	cc당 24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톤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73

고가 외제차와 저가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지?

- 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와 이용에 따른 도로손상,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유류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감안하여,
- 자동차의 가액이 아닌 배기량으로 과세함

74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75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 순위가 동일하면 그 중 연장자에게 부과

76

자동차를 양도 후에 자동차세가 또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
- [예시 : 일할계산]
 - 9월 10일 차량을 매각한 경우 과세기간 : 7. 1. ~ 9. 9.
 - 9월 10일 폐차한 경우 과세기간 : 7. 1. ~ 9. 10.
-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77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는 매년 해야 하는지?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 없음
-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함

78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지?

- 1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가능

79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연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음



4

기타 지방세

편 제1장 주민세
제2장 지방소득세

2021.05.01부터 시행

임산부 안전벨트



내 아이와 나를 지키는 필수품!

어깨, 허리, 가랑이
네 방향으로
충격분산

간편한 장착
한바퀴만 돌리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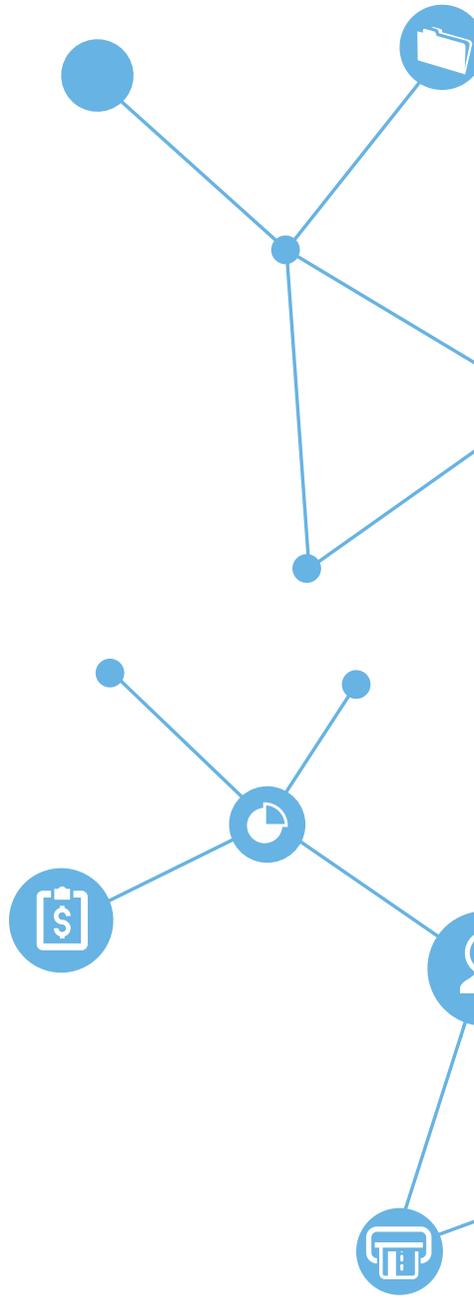
임산부벨트
설명서보기 >>



남구보건소에서 무상대여 받으세요!

남구청 607.4352 / 보건소 607.6428





제1장 주민세

80

주민세(개인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액이 다른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

81

주민세(개인분) 과세 제외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0세 미만 미혼인 세대주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7.1)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82

주소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를 2장 받았는데 이중과세 아닌지?

-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두 건의 납세 의무자가 됨

83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 사업주(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
 - 일반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
 - 면세사업자: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 ※ 임차건물의 경우, 소유주는 주민세(사업소분)의 2차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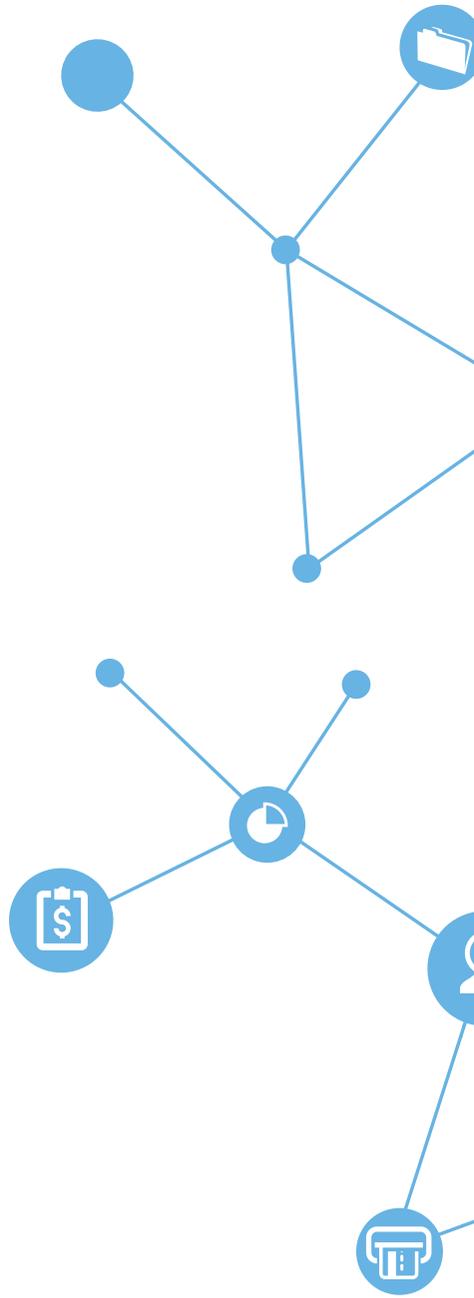
84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급여총액 :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85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는 무엇인지?

- 중소기업이 최초로 직원을 50명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해당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여야 할 달부터 1년간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지방세법 제84조의 5에 따라 계산액)을 공제하는 제도





제2장 지방소득세

86

지방소득세란?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소득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7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 개인지방소득세(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양도일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88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다만 둘 이상의 시·구·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

89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양도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90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는?

- 납세의무성립(12.31.)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 [예시] '21년 3월에 부산 남구에서 창원시 의창구로 이사를 간 경우 납세지 : 부산 남구

9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내는지?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납부

9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나,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지연일자 × 25/100,000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납부 하여야 할 납부세액 -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 × 10%
 -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 납부 세액 × 납부지연일자 × 25/10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75 한도로 함



5

편

지방세 체납처분

유모차 살균소독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해요!

유모차 살균소독기 자외선 램프를 통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 살균 가능

- 설치장소** 용호1동 현장민원실,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평화공원
- 소독가능물품**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카시트, 휠체어 등
(전동 휠체어 제외, 전자제품 제외)
- 사용방법** 시작 버튼 누르고 **1분이면 OK!**
(살균기 문은 열고 소독물품을 집어넣은 후 문을 닫고 시작버튼을 누릅니다)
- 이용료** 무료
- 주말 이용 희망자** ① 남구청 1층 서편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서 이용 가능
② 용호1동, 대연3동(주말사용불가)
- 문의처** 남구청 여성아동과 ☎ 607-4352



93

지방세를 체납해서 받는 불이익은?

- 가산금 부담(최대48%)
- 압류독촉기일까지 미납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압류
- 허가, 인가를 요하는 사업자의 경우 : 관허사업을 제한(사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 등)
-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및 해외출국 금지

94

부동산 압류 당시 체납된 금액만 납부하면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지?

-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때문에 현재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압류 해제됨

95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은 계속 진행되며, 체납처분의 효력이 상속인에 미치지 때문에 피상속인의 체납금액을 납부해야 함

96

경매의 낙찰대금 배분할 때 우선시 되는 지방세는?

- 해당 물건에 부과된 지방세(자동차경매의 경우 자동차세, 부동산 경매의 경우 재산세 등)

97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에 입찰 방법은?

- 부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민원안내 → 온라인민원 → 자동차인터넷공매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세무) 클릭하여 공고번호, 입찰기간, 개찰일, 입찰상태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

98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 아닌지?

-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단,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그러나 압류 등 시효의 중단의 사유에 해당되면 압류 해제가 된 날로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

99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한지?

- 인터넷(정부 24),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방문 발급할 경우 : 인근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0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납세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제3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포함)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도움이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제공(법인이나 고소득자는 제한될 수 있음)
- ☞ 대상 :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모든 조세
- ☞ 명단(5명, 가나다라 순)
 - 변현순 : 631-9998(FAX 647-1316) - 손무식 : 316-0636(FAX 316-0638)
 - 이영근 : 631-9999(FAX 627-8277) - 장종호 : 323-3300(FAX 323-5300)
 - 조현진 : 643-5212(FAX 643-5210)

▣ 부산광역시 남구 선정대리인

- ☞ 목 적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 ☞ 이용대상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소유재산 5억원이하인 개인
- ☞ 명 단 :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관련경력 3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시에서 지정)
- ☞ 신 청 : 청구금액 1천만원이하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접수시 구세는 구 세무부서, 시세는 시 세정담당관에 신청

▣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 ☞ 처리업무
 -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 보호요청 민원
 -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 담당부서 : 남구청 소통감사담당관(대표전화 : 607-4914)

▣ 지방세 세목별 문의사항 전화번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 607-4191~6
- 자동차세 : 607-4211~3
-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 : 607-3341~3
- 지방세 환급 : 607-4234
- 재산세 : 607-4201~6
- 지방소득세 : 607-4251~5
- 주택가격 : 607-4921~4
- 지방세 체납 : 607-4241~6

※ 이 책자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세관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랑상품권



※ 이 책자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세관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